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4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3가합517759 공개청구 등

원 고 1. 서○○

2. 김○○

3. 임○○

피 고 1.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2. 주식회사 케이티

3.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변 론 종 결 2014. 4. 22.

판 결 선 고 2014. 5. 2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김○○의 공개청구 및 원고 임○○의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공개청구 부분을 각각하한다.
2. 피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는 원고 서○○, 임○○에게 위 피고가 수집, 보유하고 있는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서○○, 임○○와 피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사이의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김○○, 임○○와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사이의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2항 및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KT'라 한다)는 원고 임○○에게, 피고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LG'라 한다)는 원고 김○○, 임○○에게 위 피고들이 수집, 보유하고 있는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고, 피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라 한다)은 원고 서○○, 임○○에게, 피고 KT는 원고 임○○에게, 피고 LG는 원고 김○○, 임○○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 가. 피고들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전기통신사업자이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다.
- 나. 원고 서○○은 피고 SK, 원고 김○○는 피고 LG와, 원고 임○○는 피고 SK, LG 와 각 이동전화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원고 임○○는 과거 피고 KT와 이동전화이용계약을 체결하고서 2012.경까지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 다. 원고 서○○은 2013. 11. 28. 피고 SK에게 홈페이지 고객게시판을 통하여 자신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 정보기관 등에 열람하게 하였거나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와 제공 내역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SK는, 위 내역은 통신사가 아닌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원고 김○○는 2012. 11. 23. 및 2013. 2. 22. 피고 LG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같은 내용의 요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LG는 이 사건 2013. 5. 21.자 답변서를 통하여 위 원고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원고 임○○는 2013. 1. 8. 피고들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같은 내용의 요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SK는 답변하지 않고 있고, 피고 KT는 2013. 5. 14.에, 피고 LG는 이 사건 2013. 5. 21.자 답변서를 통하여 각 위 원고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내지 9호증, 을나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인 원고들에게, 피고들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여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이 위법하게 공개를 거절하거나 수개월 지체하여 원고들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불안감이나 불쾌감 등 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KT, LG에 대한 공개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KT는 원고 임○○에게, 피고 LG는 원고 김○○, 임○○에게 각 통신자료제공 현황을 공개하였다. 따라서 원고 김○○의 공개청구 및 원고 임○○의 피고 KT, LG에 대한 공개청구 부분은 이미 목적을 달성하여 권리보호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4. 피고 SK에 대한 공개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개의무의 발생 근거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 결정 등 참조).

따라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권리가 법률상 구체화 된 것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30조 제2항이다.

2)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이용자는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 제2항에 따른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하는 이용자의 성명(제1호), 주민등록번호(제2호), 주소(제3호), 전화번호(제4호), 아이디(제5호), 가입일 또는 해지일(제6호) 중 가입일 또는 해지일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해당 개인

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정의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피고 SK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인 원고 서○○, 임○○의 요구에 응하여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SK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SK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호 마목은 수사에 관한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공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2호는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의 대상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제공한 통신자료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통신자료제공 현황은 전기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에 의한 공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사이의 관계에 적용되나, 같은 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별법이 우선 적용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공개청구에 대한 제한 또는 거절사유를 규정한 반면, 정보통신망법은 제30조 제2항에 따른 공개청구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을 뿐 달리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보호수준을 더 강화하고 있다. 즉,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침해될 위험이 크다고 평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보다 적극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에 의한 공개청구에는 개인정보 보호

법 제35조 제4항에 정한 따른 제한 또는 거절이 허용되지 않는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2011. 12. 발간한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와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의 관계에서는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은 제30조에서 이용자가 개인정보 처리현황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제30조의2 및 시행령 제17조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와 같은 공개청구 없이도 이용자에게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위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2호는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대상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제공한 통신자료를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의무에 대한 예외일 뿐이다. 피고 SK의 주장과 같이 위 예외사유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공개청구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이 2012. 2. 17. 제30조의2를 신설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강화한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피고 SK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SK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들의 통신자료제공 현황 공개청구에 무조건 응해야 한다면 수사기관의 수사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여 공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통신자료제공 현황을 공개하더라도 수사의 밀행성을 크게 해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즉,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은 주로 수사기관이 수사개시 단계에서 수사대상을 특정할 목적으로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데 이용된다. 그런데 이용자가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자신을 피의자로 하여 수사가 개시된 것인지 단지 참고인에 불과한 것인지, 피의사실의 내용, 수사범위나 진행방향 등에 관하여 전혀 알 수 없다. ② 증거 인멸, 도주 등의 우려는 어느 경우에나 있을 수 있고, 통신자료제공 현황을 공개하면 그 우려가 더욱 커진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수사의 밀행성 보장은 수사의 편의를 위한 것인 반면, 통신자료제공 현황의 공개는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것이므로 보다 보호가치가 크다.

이와 달리 통신자료제공 현황을 공개할 경우 수사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대검찰청, 경찰청, 국가정보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는, 위 각 기관들은 수사업무의 당사자여서 답변 내용의 객관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보이므로 믿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 SK가 지적한 바와 같이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자신에 대한 수사개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복적, 지속적으로 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아야 할 것이나, 현재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나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피고 SK는,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고 전기통신사업자인 피고들에게 직접 공개청구를 하는 것은 위 법에서 정한 정보공개심의회 등 절차적 통제를 잠탈하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받은 통신자료가 편철된 형사사건기록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 후에 열람·등사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통신자료제공 현황의 공개의무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수사기관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대로라면 이용자는 각각의 수사기관에 개별적으로 공개청구를 해야 할 것인데, 이용자로서는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는지 여부 및 제공되었다면 어느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는지를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위 방법은 현실적으로 극히 어렵다. 반면,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자료제공요청서)으로 하여야 하고,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 해당 사실 등을 기재한 대장과 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두어야 하므로(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4항, 제5항),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통신자료제공 현황을 쉽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나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수사기관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어떠한 의무도 지우고 있지 않으므로, 통신자료제공 여부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재량이다(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마439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나19012 판결 등 참조). 실제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수사기관에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심사 없이 제공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위 2011나19012판결이 나온 이후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들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실도 있다.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는데, 통신자료제공의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의 구체적인 제공행위가 있은 때에 비로소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위 2010헌마439 결정 참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주체는 전기통신사업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전기통신사업자인 피고들이 통신자료제공 현황을 확인

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SK는,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79206 판결에서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 현황에 대한 공개청구를 기각하였는데, 보다 기본권 제한 정도가 중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대해서도 공개를 부정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통신자료제공 현황에 대한 공개청구도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통신자료의 제공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절차가 다르게 규율되고 있으므로, 위 2010다79206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오히려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는 법원의 통제를 거치고 제공한 후에는 이용자에게 제공사실을 통지해주도록 정한 반면, 정보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전 및 사후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용자들이 통신자료 제공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무분별하게 통신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막을 필요성이 있다.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통신자료제공 현황의 공개를 청구한 이상 피고들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거나 수개월 거부하다가 뒤늦게 공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원고들은, 그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는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무분별하게 제공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제공 현황을 전혀 파악할 수 없게 되어 느끼는 불쾌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피고들이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나 이에 대한 우려는 공개청구에 대한 거절과 관계없이 위 법

에서 피고들에게 통신자료 제공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발생된 것이다. ② 이 사건은 피고들이 제3자에게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유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수사기관에게 법률에 따라 제공한 통신자료의 현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 ③ 피고들이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하더라도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른 공공 목적의 통신자료제공인 데다가, 위 규정에 따라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에 그치고, 이를 받은 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어서 그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다시 유출될 위험이 적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이 통신자료제공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여 느낀 불안감이나 불쾌감은 막연한 감정에 불과하고, 사회 통념상 금전으로 위자할 만한 구체적인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들의 공개거부로 원고들이 입은 정신상의 고통은 피고 KT, LG가 공개청구에 응하여 이미 회복되었거나, 이 사건 공개청구가 인용되면 회복될 것이다.

그래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은 특별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통신자료제공 현황의 공개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와 이에 대한 예견 가능성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서○○의 피고 SK에 대한, 원고 김○○의 피고 LG에 대한, 원고 임○○의 피고들에 대한 각 위자료청구는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 김○○의 공개청구 및 원고 임○○의 피고 KT, LG에 대한 공개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 각하하고, 원고 서○○의 청구 및 원고 임○○의 피고 SK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

어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서○○, 임○○와 피고 SK 사이의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 99조를 적용한다.

재판장 판사 김연하

판사 이태경

판사 이지웅